

第243回国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1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10月16日(木)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계속)

審査된案件

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위원회안)(계속) 1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목요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 국회(정기회) 제1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田春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새로 보임되어 오신 **李敬在**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李敬在** **委員** **李敬在**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 **李敬在** 위원님은 원래 정개특위 위원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또 사정에 의해서 사임을 하셨다가 다시 재보임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개특위 활동방향이나 또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잘 협조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위원회안)(계속)

(11시02분)

○위원장 **목요상**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金容鈞** 소위원회 위원장님 제안설명과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鈞** **委員** **金容鈞**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3항은 비례의원칙 등을 지키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마련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지난 10월 13일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 당 간사에게 이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위임한 바 있었고, 10월 14일 각 당 간사단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마련해서 10월 16일 우리 위원회 선거법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안이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퇴시한을 종전의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요상** 지금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千正培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정배 위원** 소위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개정취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서 그 헌법불합치 상태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120일로 고치면 합헌판결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고 제안이 되었겠지요?

○**金容鈞 委員**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런데 그 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결정에 원래 현행법이 자치단체장의 권위로 인해 지나치게 행정공백을 장기화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예로 들어보면 만약 이번에 자치단체장이 내년 총선출마를 위해서 사퇴하고 그리고 나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보궐선거가 내년 언제입니까?

○**朴柱宣 委員** 6월 10일입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사퇴시한이 120일 전이 되면 대체로 12월 16일경이고 그다음에 실제 보궐선거는 6월 10일경이니까 그래도 6개월 가까운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관해서 간사들께서 협의도 하신 것 같은데 위헌상태를 해소할 만큼 충분히 해결되었다고 보시는가요?

○**金容鈞 委員**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취지가 어떤 것이냐, 그 주문에 따르면 6개월로 정한 것이 위헌이다.

우선 천정배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주문에 한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후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헌결정이 난 부분은 6개월이라는 부분이 위헌이 된 것이고 6개월 이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 이후 부분에서 조금 당기는 것이 좋다는 취지이고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6개월이라고 우리가 보았고요.

또 4개월 전 사퇴가 필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자체가 전 주민을 상대로 부단히 접촉하고 시혜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일거일동이 사전선거운동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4개월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었고 다만,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6월

에 선거를 시행하게 함으로써 약 한 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생깁니다마는 그것은 4년에 한 번 정도 생기는 부분이라는 취지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정배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국회에 낸 의견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金容鈞 委員** 현재 공식적으로 받은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20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들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沈揆喆 委員** 이의는 없는데 조문에 자구상 겹친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겹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더 넓은 경우도 있고 100% 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의 계양, 강화 같은 데 구청장 같은 경우 강화는 겹치지 않지요. 또 저희 같이 3개군의 군수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겹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지역이 겹쳐야 되는 것인지, 부분이 겹쳐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 목요상** 소위원장이 한번 말씀하시지요.

○**金容鈞 委員**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沈揆喆 委員** 조금이라도 겹치면 다 겹치는 것으로요.

○**위원장 목요상** 더 이상 말씀하실……

○**李敬在 委員**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예, 말씀하세요.

○**李敬在 委員** 12월 16일까지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보궐선거를 6월에 하게 되어서 6개월의 공백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아마 총선거 또는 전국구 단위의 선거가 있고 난 다음 50일을 지나야 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총선거 때도 보궐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선관위 쪽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 인지요?

○**위원장 목요상** 이것은 우리가 법률을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사퇴

하는 지자체장들의 보궐선거를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총선거 때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의견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정안을 앞으로 우리 정개특위에서 가결해서 처리를 해 주면 해결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4당 간사들이 공동발의하고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친 내용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3항의 지자체장 사퇴시한 180일을 120일로 단축하는 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出席委員(13人)

강 봉 균 金 聖 順 金 容 均 金 學 元
 목 요 상 朴 柱 宣 신 기 남 沈 揆 喆
 李 敬 在 李 方 鎬 全 甲 吉 정 의 화
 천 정 배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수 석 전 문 위 원 李 昌 熙
 전 문 위 원 安 秉 玉
 입 법 심 의 관 李 秉 吉

【報告事項】

○特別委員辭任및補任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渉團體
政治改革特別	安商守		한나라당
		李敬在	한나라당

(10월14일자)